

**SK바이오팜
협력사
ESG 가이드라인**



[윤리]

1. 사업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부패방지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기타 형태의 이득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부패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격 인상, 시장 분할, 출고 조절 등)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정보 공개

협력사는 각 국가별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불가합니다.

3. 지적 재산 보호

협력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적 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SK바이오팜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4.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 및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정보는 사전 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5. 공정거래/광고 관행

협력사는 여러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기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구매 절차를 위한 거래, 공정 광고 및 경쟁들을 영위해야 합니다.

6.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투명한 협력사 경영을 위한 내부고발자 제도를 운영하며 내부고발자 발생 시 신원을 보호하고 보복 금지를 진행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7. 책임있는 광물 조달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분쟁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계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광물 조달에 힘씁니다.

[노동/인권]

1. 강제노동(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 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 시간

협력사는 각 국가별 법규에 의해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 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각 국가별 근무 허용 시간 규정을 넘어서는 안되며,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3. 아동 근로자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15 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임금, 초과 근무시간 보상,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관련 국가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기준은 급여내역서나 유사한 서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내역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6. 다양성 인정

협력사는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각 국가별 법령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결성 등을 금지하지 않으며, 참여 권리 및 집단교섭권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에서 노동조합 관련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 등이 없어야 합니다.

[보건/안전]

1. 산업안전

협력사는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도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설계, 엔지니어링, 예방 정비 등을 통한 공학적 개선,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관리적 개선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유형 별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또한 상황종료 이후 사태파악 및 평가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산업 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적절한 휴식 및 스트레칭, 인력배치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위생, 식품 및 주거

협력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소방시설, 난방, 환기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보건/ 안전 커뮤니케이션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보건/안전 우려사항은 지체없이 제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

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각 국가별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 환경 인허가 사항(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각 국가별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고 자원 및 물(상수, 우수 등)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3. 유해 물질 관리

협력사는 각 국가별 규정에 근거하여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에서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폐기물 및 물(폐수) 관리

협력사는 각 국가별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처리 공정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5.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관리

협력사는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배출 시 현지 법령에 따라 관리 또는 처리한 뒤 배출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제품 함유 물질 규제 및 표기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한 각 국가별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